

제 12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(안) 번안 의결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2. 25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2. 25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19 명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: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(안) 1부. 끝					
1992 년 2 월 2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9	반 대		기 권

구미시의회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(안)

구미시의회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 10 명
2. 산업.건설위원회 11 명
3. 의회운영위원회 11 명

제 3 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 : 기획실,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2. 산업.건설위원회 : 사회산업국.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의회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

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 5 조 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6 조 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(이하 "상임위원장" 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 8 조 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제 10 조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 11 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12 조 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13 조 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(1991.4.12. 조례 제942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12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 규칙(안) 의결의 건					
집 회 기 간	1992. 2. 25 (1일간)					
의 결 일 시	1992. 2. 25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19 명	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: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 규칙(안) 1부. 끝						
1992 년 2 월 2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9 명	반 대		기 권	

구미시의회의회의규칙중 개정 규칙(안)

구미시의회의회의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간사"를 "사무과장"로 한다.

제 3 조 를 삭제하고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3 조 (의석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

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
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제 16 조 제 2 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16 조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20 조를 삭제하고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20 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제 20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20 조의 2 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
회부할 수 있다.

제 20 조의 3 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20 조의 3 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
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20 조의 4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20 조의 4 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
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
다.

제 25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25 조의 2 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51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51 조의 2 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
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제 55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제 55 조의 2 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 61 조 를 삭제하고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61 조 (예산안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65 조를 삭제하고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65 조 (결산의 심사)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
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 73 조 제1항중 "일정한"을 "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"으로 하며, "의장은 사태가"를 "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"로 한다.

부

칙

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